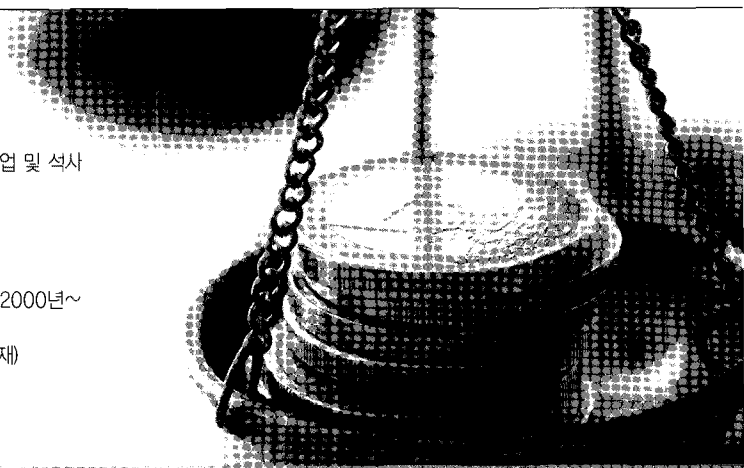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2009년 10월 15일 한·EU FTA 가서명을 시작으로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경쟁력 강화대책 등을 논의하고, 피해에 상분야의 업계의견을 수렴하며 협상을 진행하다가 2010년 10월 6일 정식서명을 한 바 있다.

한·EU FTA 협상체결로 인하여 축산업분야에도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정부는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 중에 있어 이 번호에서 알아보려고 한다.

### 1. 한·EU FTA 경제적 효과분석

한·EU FTA 체결로 GDP는 장기적으로 최대 5.6% 증가, 일자리 25만개 창출, 무역수지는 연평균 3.6억달러의 추가적인 흑자가 전망되나, 농업 분야는 발효 후 15년간 약 2.2조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며, 그 중 약 2조원이 축산업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참고로 한·미 FTA 체결로는 농업분야에서 10조원이, 이중 축산업분야에서 7조원의 생산감소를 예상했었다.

〈표 1〉 한·EU FTA에 따른 축산분야 생산감소액

(단위: 억원)

구분	연평균 생산감소*	15년간 생산감소*
돼지고기	733	10,991
쇠고기	207	3,100
낙농품	246	3,685
닭고기	156	2,348
기타 농산물	106	1,595
소계	1,448	21,719

※ 한·미 FTA 이행 전제(비전제시 연평균 1,776억원, 15년간 26,640억 원 생산감소)

### 2. 한·EU FTA에 대한 대책의 기본방향

한·EU FTA 추진으로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산업에 대해서 추가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직접적인 피해보전보다는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은 한·EU FTA로 피해가 집중될 축산업·화장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하여 마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업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고, 재정 지원·세제상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하여 정책적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다. 또한 직접적 피해보전은 농수산업분야에서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표 2〉 한·EU FTA에 대한 피해대책 방안

정책과제	추진방안
취약산업 경쟁력 강화	-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 양돈, 낙농, 양계, 한우우 -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사업 활성화
직접적 피해보전	- 소득보전직불제·폐업지원제도 운용 기간 연장
FTA 활용도 제고	- 국내외 설명회 개최 - FTA건설팀 지원 - 인증수출자 조기지정 -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 3. 한·EU FTA 체결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

#### 가. 주요 재정지원 사업(양계)

- 2016년까지 난계대 전염병, 뉴캐슬병 근절을 위하여 종계·부화장 및 삼계탕용 병아리 생산농장에 대한 일제조사(연 2회) 실시
- 병아리 공급시 혈통보증서 발급의무화, 고유번호 부여후 표시의무화 추진 등의 병아리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방역관리 강화
- 대형닭 생산과 전문종계장 육성을 통한 생산비 절감, 전문 원종계장 육성·종계장 현대화 등으로 생산성 제고, 도계·가공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으로 도계시설의 위

생·안전성 제고

#### 나. 세제상 지원

- 1) 축산농가(일반농·어·임업 가구도 적용)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 일괄공제 5억원에 더하여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 되므로 영농상속액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2011년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려고 한다.
- 2) 축산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기자재를 중심으로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현행 12개)에 추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특례규정)”을 개정하여 2011년 중 시행하려고 하며, 대상품목은 인공수정 주입기 및 주입용기, 정액희석재,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 축산용 쿨러패드, 축산용 환기팬 및 팬 콘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트라이바이다.
- 3) 축사의 경우 가축배설물에 따른 조기노후화를 감안하여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 2011년 중 시행 목표)

#### 다. 제도개선

이력관리체계 확대, 가축분뇨 퇴·액비의 활용률 제고 등 8개 과제를 선정, 2013년까지 완료 계획